

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교육부의 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조사 및 정비 협조요청’에 따라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4조에 근거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절차를 명확히 반영함 (제47조)

2. 개정 세칙

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3항 “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”를 “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로 한다.

부 칙(2025. 5. 29. 개정)

이 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	신	개정 이유 및 내용
<p>제47조(논문심사위원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<u>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(원)장이 위촉</u>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7조(논문심사위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_____ <u>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2025. 5. 29. 개정)</p> <p>이 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개정 이유 및 내용</p> <p>*논문심사위원 선정절차 정비</p>